

의안번호	2215567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5B746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3항)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영상의학·호흡기내과·예방의학·소아청소년과 또는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처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제4항)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1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4조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사실조사 등)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20조(환경피해관리센터의 설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지원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환경피해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하 “환경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제2항) 1.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2.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4.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6.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피해관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3항)	
5	안 제22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항) 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연구·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23조(건강모니터링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피해자는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절차·방법 및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24조(교육지원 등)	국가는 피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6조(치료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27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제1항)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2항) 1.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45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10	안 제29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제1항)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위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환경피해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 환경피해관리센터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4항)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 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3	안 제11조(사실조사 등)		
4	안 제20조(환경피해관리 센터의 설립 등)		
5	안 제22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		
6	안 제23조(건강모니터링 실시)		
7	안 제24조(교육지원 등)		
8	안 제26조(치료비 지원)		
9	안 제27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	·미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31조 ¹⁾ 및 제33조 제4항·제5항 ²⁾ 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또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규모와 동일하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29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영)		

1)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2. 상세 사유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위한 사실 등을 조사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규모·사실조사의 범위·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³⁾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6,011명임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 2)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서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삭제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표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및 인정 현황

(`26.5.31 기준, 단위 : 명)

신청 (a+b+c+d)	철회 (a)	노출 미확인 (b)	노출확인 조사중 (c)	노출확인(d)				
				계	피해 인정	불인정	판정 대기	신청 반려
8,084	240	124	64	7,656	6,011	1,028	195	42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환경피해관리센터의 설립 등(안 제2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등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피해관리센터를 지정·운영 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30억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존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수행할 계획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및 대상의 확대에 따라 인력·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사업의 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른 환경피해관리센터의 인력 규모 및 구성 등을 현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다.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2조)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⁵⁾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26억 5,000만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업무의 범위 및 대상 변동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사업의 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인력 규모 및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라. 건강모니터링 실시(안 제23조)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된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54억 8,000만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건

5)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강모니터링의 방식 등의 변동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 및 건강모니터링의 방식 및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마. 교육지원 등(안 제24조)

-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 국가가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중인 피해자의 규모 및 지원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바. 치료비 지원(안 제26조)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⁶⁾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고 필요한 치료의 종류가 다양해질 경우, 치료비 증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 및 필요한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6)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피해구제자금 관련 현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피해구제자금 현황

○ `26.5 기준 피해구제자금 잔액 915억원

- (수입액) 2,948억원(사업자분담금 2,500억원, 정부출연금 325억원 등)
- (집행액) 2,034억원(분담금 소진율 72.0%)

(`26.5.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수입			지출 (c)	분담금 소진율 (c/a)	잔액 (a+b-c)
	계 (a)+(b)	분담금 등 (a)	이자수익 (b)			
계	2,948	2,825	124	2,034	72.0%	915
사업자분담금1)	2,604	2,500	104	1,913	76.5%	691
정부출연금2)	345	325	20	121	37.3%	223

1) 사업자분담금: `17년, `23년 각각 1,250억원 부과(분담금 75%이상 집행시 추가 분담금 부과)

2) 정부출연금: `19년~`21년 225억원, `26년 100억원(요양급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소진률 낮음)

□ 구제자금운용 위원회 현황

○ 최근 3년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개최 현황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1회	2회	2회	2회

○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

위원수			임기(2년)
계	당연직*	외부위원	
14명	2명	12명	`24.12.4~`26.12.3(8명) `25.1.8.~`27.1.7(4명)

* 당연직: 기후부 환경보건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